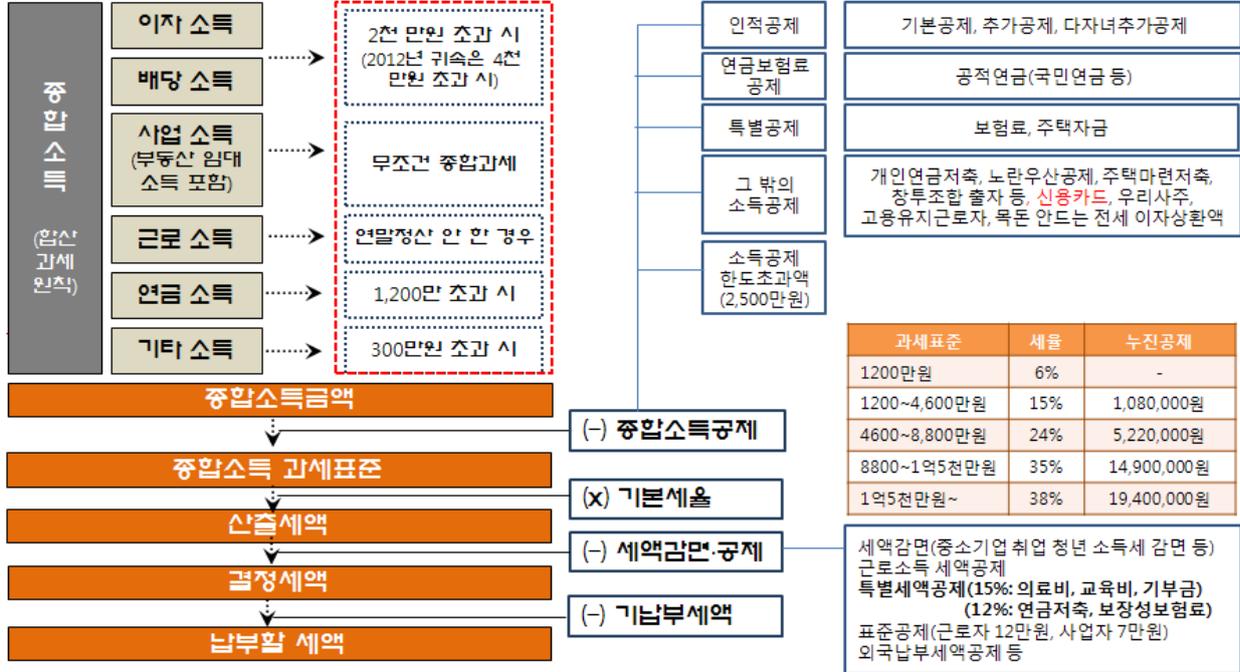


■ 종합소득세 계산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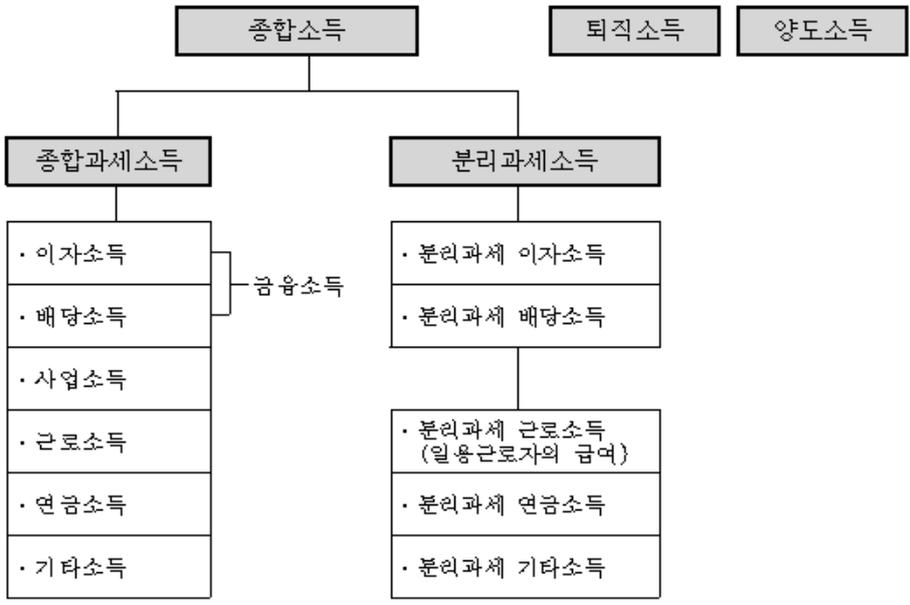
이 종합소득세액 계산은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하는 분부터 지원합니다.

이 종합소득세액 계산은 개략적인 계산이므로 정확한 세금산정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2. 소득의 구분과 종류



3.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종합과세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는 소득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분리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소득이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분리과세소득에는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근로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세금을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말하며 소득종류별로 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합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비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① 종합과세 기준금액(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② 이자·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 ③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배당

2)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① 10 년 이상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30%)
- ②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38%, 90%)
- ③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14%)
-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로 과세)
- 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소득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파트관리비·수선충당금 등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소득 등(14%)
- ⑥ 금융소득으로서 연도별 금융소득이 2 천만원(종합과세 기준금액)이하인 경우(14% 또는 25%(비영업대금이익))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① 2015.12.31.전에 받는 선박펀드의 배당소득
액면가 5 천만원 이하 보유주식 부분의 배당소득(9%)
액면가 5 천만원 초과 2 억원 이하 보유주식 부분의 배당소득(14%)
- ② 2016.12.31 이전에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액면가 5 천만원 이하 보유주식 부분의 배당소득(9%)
액면가 5 천만원 초과 2 억원 이하 보유주식 부분의 배당소득(14%)
- ③ 2016.12.31.전에 받는 유전펀드의 배당소득
액면가 5 천만원 이하 보유주식 부분의 배당소득(9%)
액면가 5 천만원 초과 2 억원 이하 보유주식 부분의 배당소득(14%)

④ 2015.12.31.전에 가입한 하이일드펀드에 발생한 배당소득은

투자금액 5 천만원까지 분리과세(14%)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①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소득(90%)

②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한 이자(15%)

1997 년~1998 년 기간중 발행된 외환평형기금채권, 고용안정채권,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3)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융소득

① 신탁법(§106)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② 10 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금융소득

①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2012.12.31 까지 가입분에 한함)

②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2017.12.31 까지 가입분에 한함)

③ 65 세 이상인 거주자·장애인·독립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비과세종합저축(1 명당 저축원금이 5 천만원 이하에 한함)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2019.12.31 까지 가입분에 한함)

④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1 인당 3 천만원 이하에 한함)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2007.1.1~2015.12.31 까지 발생분에 한함)

⑤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2015.12.31 까지 가입분에 한함)

⑥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1 인당 1 천만원 이하에 한함)의 배당소득(2015.12.31 까지 수령분에 한함)

⑦ 장기보유우리스주의 배당소득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70 조의 2 제 2 항)

1) 이자,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2)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3)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4)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하여 연금소득금액을계산합니다.

5)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 73 조 제 1 항)

-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 3) 「국민연금법」등 일정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 4)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 만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으로서, 보험모집 또는 방문판매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정함)

-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6)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자
-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 8)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 9) 위 1) 부터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 10)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 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위 4)의 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1) 외국기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국내지점,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소득세법 제 156 조의 5)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 73 조 제 3 항)
- 12)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함).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위 4)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 73 조 제 4 항)
- 13) 소득세법 제 8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73 조 제 5 항)

6.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가. 원 칙

소득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간을 과세기간이라 하며, 각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을 신고기간이라 합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1 년이며, 신고기간은 그 다음 해의 5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그 다음해의 6 월 30 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70 조의 2 제 2 항)

나. 특수한 경우의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거주자가 출국(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 월 1 일부터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의 신고기간은 출국일 전일까지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 월 1 일부터 사망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한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상속인이 신고하며 신고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7. 소득세의 납세지

가. 원 칙

- 1)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
- 2)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나.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 1)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합니다.
- 2)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그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합니다.
- 3)거주자로 보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의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 납세지의 지정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거나,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사업장소재지 등을 납세지로 합니다.

8.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환급

가. 종합소득세의 신고

매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년도 5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는 5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70 조의 2 제 2 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나. 종합소득세의 납부

매해 종합소득세는 다음 년도 5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5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 70 조의 2 제 2 항, 소득세법 제 76 조)

납부방법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는 방법과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종합소득세 분납 (소득세법 제 77 조)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2 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 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